

외주 제작 계약서

(계약 주요 조건)

계약명	'삼블즈' 게임 트레일러 제작 용역 계약서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대금지급완료일
제작물 납기일	2024년 10월 30일 단, 납기일은 양당사자간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작물 형식	1. 모션그래픽 (1920*1080 / 23.976f) 2. 성우 섭외 및 녹음실 성우 녹음 (국문/영문/일문/중문(간체) 각 1편)
계약금액	17,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금 지급 조건	제작물의 납품 및 검수 완료 후 "제작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계약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고, "컴투스플랫폼"은 "제작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작자"가 지정하는 다음의 계좌로 해당 대금을 현금 지급한다. (계좌정보 : 주식회사 우주토마토 / 우리은행 /1005-204-560605)
권리관계	첨부의 계약 일반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특약사항	- 본 계약에 의한 제작금액은 제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대가를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므로, 제작물의 모든 권한은 제작물의 납품과 동시에 "컴투스플랫폼"에 귀속되며, 세부사항은 계약 일반 조건 제13조 및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에 따른다. - 본 계약에 의한 "제작물"은 "컴투스플랫폼" 판단하에 외부 공개 시점을 결정한다.
첨부문서	계약일반조건, 용역내역서, 지식재산권 양도계약서, 청렴계약이행확약서

주식회사 컴투스플랫폼(이하 "컴투스플랫폼"라 한다)과 주식회사 우주토마토(이하 "제작자"라 한다)는 "컴투스플랫폼"이 제작을 의뢰하는 제작물의 제작, 납품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위 기재내용 및 첨부 계약사항에 합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4년 10월 15일

"컴투스플랫폼"

사업자등록번호 : 491-81-00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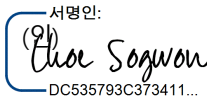
주식회사 컴투스플랫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 C동 17층

(가산동, 비와이씨하이시티빌딩)

대표이사 최 석 원

서명인:


DC535793C373411...

"제작자"

사업자등록번호 : 337-88-03265

상호 : 주식회사 우주토마토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7길 17, 2층

(역삼동, 미지허브)

대표이사 최 철 원

서명인:


EB7CCB51EC9C4B0...

(계약 일반 조건)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컴투스플랫폼"이 계약 주요 조건에 표기된 "제작물"의 제작업무를 "제작자"에게 위탁하고, "제작자"가 이를 수탁하여 제작, 납품하는 것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①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다.
 1. "제작물"이라 함은 본 계약에 따라서 "컴투스플랫폼"이 "제작자"로부터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목적물을 의미한다.
 2. "납기일"이라 함은 "제작자"가 본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을 완료하여 "컴투스플랫폼"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또는 제공하여야 할 기일 또는 "제작자"가 "컴투스플랫폼"에게 "제작물"에 대한 검수를 요청한 날을 의미한다.
 3. "불가항력"이란 태풍, 홍수, 우천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양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양 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② 기타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상관습에 의한다.

제3조 (계약의 구성 및 적용)

본 계약은 계약 주요 조건과 계약 일반 조건, 그 외 첨부문서로 구성되며, 계약 주요 조건, 계약 일반 조건의 내용이 모순, 상충되는 경우 계약 주요 조건의 내용이 가장 우선하여 적용되고, 그 이후 계약 일반 조건, 첨부문서의 순으로 적용된다.

제4조 (기본 원칙)

- ① "컴투스플랫폼"과 "제작자"는 상호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 ② "컴투스플랫폼"과 "제작자"는 본 계약 상 권리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독립된 계약자의 지위를 가지며, 본 계약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주요 조건에 표시된 바와 같다. 만약 납기 등이 지연되거나 양 당사자가 납기일을 연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연장된다.

제6조 (제작물의 형식, 제출소재 등)

본 계약에 따른 제작물의 형식, 제출 소재 등은 계약 주요 조건에 명시된 바와 같다.

제7조 (제작물의 제작)

- ① "컴투스플랫폼"은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제작자"에게 제공하고, "제작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제작물"을 제작한다. "컴투스플랫폼"이 제공한 정보를 "제작자"가 잘못 이해하거나 사용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작자"가 부담하며, "제작자"는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 또는 작업 중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컴투스플랫폼"에게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컴투스플랫폼"은 "제작물"의 제작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작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제작물의 납품 및 검수)

- ① "제작자"는 "제작물"을 "납기일"까지 납품하기로 하며, "납기일"은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계약 기간 중에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작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납기일"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제작자"는 "납기일"의 3일 전까지 "컴투스플랫폼"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컴투스플랫폼"의 서면 승인 하에 "납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만약 본 항 전단의 납기 지연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 "제작자"는 납기 지연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면한다.
- ③ "제작자"는 계약 주요 조건의 제작물 제출 소재에서 정한 바와 같이 "제작물"을 제작, 납품하고 "컴투스플랫폼"에게 검수를 요청한다. "컴투스플랫폼"은 검수를 실시하고 검수가 완료되면 "제작자"에게 검수 완료 통지를 하며, 검수 완료 통지가 있을 때에 "제작물"의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작자"가 "제작물"을 "컴투스플랫폼"에게 제공하고 검수를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도 통지가 없을 시 "제작물"은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 ④ "컴투스플랫폼"이 검수 도중 "제작물"의 하자 등을 발견한 경우 "제작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작물"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제작자"는 "컴투스플랫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및 수정하여 "컴투스플랫폼"에게 재검수를 요청하여 최종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 ⑤ "컴투스플랫폼"은 "제작물"의 검수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에 의한 검수는 "컴투스플랫폼"의 검수로 본다.
- ⑥ "컴투스플랫폼"은 검수 시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 제3자에 의하여 검수를 진행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단, "제작자"가 검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협의하여 "제작자"가 검수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제작대금 산정 시 고려/반영한다.

제9조 (제작금액 및 지급방법)

- ① 본 계약에 따른 제작금액 및 그 지급시기, 방법은 계약 주요 조건에 명시된 바와 같다.
- ② 본 계약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 주요 조건에 명시된 제작금액은 품질, 인건비, 납기, 기타 소요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방식에 따라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 금액이다.
- ③ 계약기간 중 제작금액의 산정 기초가 된 조건의 변경, "컴투스플랫폼"의 요청 등 정당한 사유 또는 작업량의 증가 등으로 "제작자"의 수행업무가 변경되거나 증가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제작금액을 서면합의에 의하여 조정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컴투스플랫폼"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 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제작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 ① "제작자"가 "제작물"을 "컴투스플랫폼"에게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제작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컴투스플랫폼"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② "제작자"가 "제작물"을 "컴투스플랫폼"에게 납품한 이후에 발생한 "제작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해서는 "컴투스플랫폼"가 책임을 부담한다. 단, 멸실 또는 훼손이 "제작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지체상금)

- ① "제작자"가 계약 기간 내에 "제작물"의 제작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컴투스플랫폼"은 지체일수에 제작금액의 2.5/1000을 곱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을 제작금액에서 공제한다.
-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제작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 "컴투스플랫폼"의 책임으로 업무수행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업무수행이 중단된 경우
 - 3. 기타 "제작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납기일"내에 "컴투스플랫폼"이 "제작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검수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제작자"의 "제작물"에 하자 등이 발견되어

- "컴투스플랫폼"이 "제작자"에게 검수 불합격에 따른 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2. "납기일"을 경과하여 "컴투스플랫폼"가 "제작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납기일"의 익일부터 검수(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 3. "납기일"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3조 (권리의 귀속, 보증)

- ① 본 계약에 따른 "제작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이를 창작한 "제작자"가 갖는다. 단, "컴투스플랫폼"이 "제작물"의 창작에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며, 본 계약 체결 이전부터 "컴투스플랫폼"에게 귀속하였던 권리는 계속하여 "컴투스플랫폼"에게 있다.
- ② "제작자"는 "컴투스플랫폼"과 별도로 교섭하여 "제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단, "제작자"의 지식재산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협의가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컴투스플랫폼"은 본 계약의 목적에 따라 "제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제작자"는 "제작물" 및 "제작물"에 포함된 요소, 제작방법에 대하여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기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하고,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 단, 제3자의 권리침해가 "컴투스플랫폼"이 제공한 자료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작자"는 "컴투스플랫폼"에게 제공받은 자료, "제작물"의 제작 시 생성된 자료, "제작물" 등을 "컴투스플랫폼"의 동의 없이 다른 업무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

제14조 (비밀유지)

- ① "제작자"는 본 계약 기간 중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컴투스플랫폼"의 비밀, 업무상의 정보, "컴투스플랫폼"가 제공한 자료(문서, 파일 등 형태는 불문한다) 및 "제작물" 등을 제3자에게 누설,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제작자"는 본 계약 기간은 물론 종료 후에도 "컴투스플랫폼"이 제공한 비밀 및 전항에서 정한 비밀유지 사항 등을 "컴투스플랫폼"의 사전 서면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제작자"는 그 임직원, 종업원, 관련자로 하여금 위 각항과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 ④ 본 계약에 따라 "컴투스플랫폼"이 제공하는 비밀, 업무상의 정보, 자료 등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제공되는 것이며, "제작자"가 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

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허락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⑤ 본 조 규정은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15조 (양도금지)

“제작자”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 또는 본 계약상의 지위를 “컴투스 플랫폼”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양도·이전·신탁·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해지)

- ① “컴투스플랫폼” 또는 “제작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서면으로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즉시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컴투스플랫폼” 또는 “제작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고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컴투스플랫폼” 또는 “제작자”가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컴투스플랫폼” 또는 “제작자”가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선고 또는 회사정리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상대방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한 경우
- ② “컴투스플랫폼” 또는 “제작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컴투스플랫폼” 또는 “제작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컴투스플랫폼”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의 이행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함으로써 “제작자”의 작업에 상당 기간 동안 지장을 초래하게 하거나 또는 “제작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업무수행을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동안 착수를 지연하여 계약기간 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컴투스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작자”에게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제작금액)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상대방이 해제(해지)권자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 없이 변제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 ① 전 조 규정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해지)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본 항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은 지체상금의 지급과는 관련이 없으며 별도 산정한다.

- ② “컴투스플랫폼” 또는 “제작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3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제작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작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제18조 (이의 및 분쟁의 해결)

- ① “컴투스플랫폼”과 “제작자”는 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관습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② 상호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컴투스플랫폼”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 (경제적 이익의 제공 금지)

- ① “제작자”는 “컴투스플랫폼” 소속 임직원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받거나 업무 수행 도중 관련 내용을 알게되는 경우 이를 “컴투스플랫폼”의 윤리경영 담당부서(연락처: holdings.legal@com2us.com)에 알려야 한다.
- ② “컴투스플랫폼”은 “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 등을 하는 경우 “제작자”에게 업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③ “컴투스플랫폼”은 “제작자”에게 청렴이행확약서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자”는 이에 협조한다.

제20조 (기타)

- ① 모든 통지는 서면(또는 이메일 등 전자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은 계약주체에 관하여 완전합의를 구성하며, 계약조건의 변경, 수정은 양 당사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서명, 날인이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효력을 갖지 못한다.
- ③ 본 계약의 첨부서류는 양 당사자간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서명, 날인이 있을 경우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유효한 효력을 가진다.
- ④ 본 계약은 양 당사자 및 그들의 각 승계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 ⑤ 모든 권리의 포기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어떠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 하여 추후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상의 어느 조항의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추후 계속되는 해당 조항의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 또는 해당 조항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⑥ 본 계약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항이 법률 등에 의해 무효, 부적법 혹은 집행 불능인 경우에도 본 계약의 잔여조항의 유효, 적법성,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새로이 유효, 적법한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써 무효조항의 본래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오로지 편의상 붙여진 각 조의 제목들은 본 계약의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1조 (정보보호 특약)

- ① "제작자"는 "컴투스플랫폼"의 (개인)정보 및 정보자산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제도, 지침 및 "컴투스플랫폼"의 보안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한다.
- ② "컴투스플랫폼"은 "제작자"에게 "컴투스플랫폼"의 보안요구사항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작자"는 이에 따라 적극 수행해야 하며, 사업 수행 과정에서 보안 사고가 의심되거나 발생된 것을 확인한 경우 즉시 "컴투스플랫폼"에 알리고 사고에 대응한다.
- ③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컴투스플랫폼"에 상주하는 "제작자"의 인력은 "컴투스플랫폼"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로 제한하며, "제작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제작자"의 인력을 대상으로 정보보호서약서/비밀유지서약서 징구, 투입/변동/철수 인력 관리 등 보안 관리에 책임이 있다.
- ④ "컴투스플랫폼"이 "제작자"에게 소스코드를 전달하는 경우 "컴투스플랫폼"은 "제작자"에 대하여 '소스코드 반출 및 기밀유지 협약서'를 징구할 수 있고, "제작자"는 이를 "컴투스플랫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작자"는 "컴투스플랫폼"의 IT 자산 및 시스템에 접근이 필요할 경우 "컴투스플랫폼"의 사전 승인 후 계정/권한을 발급 및 관리하며, IT 자산 및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등)를 실시한다.
- ⑥ "제작자"는 본 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도급/재위탁 할 경우 본 계약 수준의 보안 요건 및 요구사항을 계약서에 포함하고, 하도급/재위탁 업체에 대해 보안 이행 여부 및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 ⑦ "제작자"는 "컴투스플랫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개인)정보, 자산을 본 계약 목적 외로 처리할 수 없으며, 본 계약 이행의 모든 과정에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사업 종료 시 "컴투스플랫폼"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폐기, 자산은 반납한다.
- ⑧ "제작자"가 본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첨부. 용역내역서

1. 용역 대상

- '삼블즈' 트레일러 영상 제작

2. 용역수행 일정

- 용역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대금지급완료일
- 납기일 : 2024년 10월 30일. 단, 납기일은 양당사자간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3. 용역결과물 상세 조건

- '삼블즈' 게임 트레일러 모션그래픽 영상 제작
- 성우 섭외 (국문/영문/일문/중문)
- 녹음실 대관 및 성우 녹음

4. 납품 장소

- "컴투스플랫폼"이 별도 지정하는 장소.

5. 견적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7길 17, 2층(역삼동)
 Office: 010.7724.5974 Website: www.spacetmt.com E-mail:st@spacetmt.com

Project Information			
프로젝트	샘플즈 트레일러	등록번호	337-88-03265
대행사	컴투스플랫폼	상호	주식회사 우주토마토
기간	협의	대표	최철원
총건적	₩17,600,000	소재지	강남구 선릉로1017길 17, 2층
광고주	EXLIX	작성자	최철원

Quated Based on			
본 촬영	일	편집(현장 및 수정편집 포함)	5 일
데이터 백업(컨버팅 포함)	일	2 D Motion & Artwork	20 일
편집 기획	일	2 D/3 D 합성(Remover)	7 일
아트 디자인 시안	일	녹음 (수정녹음 포함)	일
텔레시네	일	시사후 수정 및 기타 후반	3 일

Number of Post Production Crew					
텔레시네		명	대행사 및 포스트 스태프 포함	그래픽	3 명
편집	1	명	대행사 및 포스트 스태프 포함	녹음	1 명

Summary of Estimated Product Costs					
No.	항목	내용	소계	견적금액	합의금액
1	편집기획료부문	기획구성료, 편집연출료, 애니매티크, 이미지 스토리보드	소계A		0
2	포스트프로덕션부문	텔레시네, 편집료, 2D Motion, 성우료, 녹음료	소계B	17,600,000	0
3	저작권료부문	자료 화면 사용료, 초상권사용료	소계C	0	0
총 계 (KRW)				17,600,000	

부가가치세(10%) 별도

2024년 09월 24일
 위와 같이 견적을 제출합니다.

(주)우주토마토 대표 최 철 원

청렴계약이행 확약서

본 청렴계약이행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는 주식회사 컴투스플랫폼(이하 "회사"라 한다)과 주식회사 우주토마토(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간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회사"의 윤리경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조(청렴 계약 이행)

"거래상대방"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회사"의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 구체적 사례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수준의 기념품, 선물을 제외한 금품 제공 행위
2. 사회 통념 상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 향응 제공, 접대 행위
3. 공식 행사 시 교통, 숙박, 관광, 행사 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단. 공식 행사 시 참가자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회사"의 직원에 대한 직, 간접적인 금전거래 또는 부동산거래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 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2조 (거래상대방의 협조 의무)

"회사"의 내부 윤리규정 또는 법령의 위반 혐의가 발견되어 "회사"가 조사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은 조사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계약서, 회계 관련 문서, 기타 확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포함합니다)의 제출을 포함하여 "회사"의 요청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기로 합니다.

서약자 본인은 위 확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10월 15일

상호 : 주식회사 우주토마토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07길 17, 2층
(역삼동, 미지 허브)

대표이사 최 철 원 

서명인:

EB7CCB51EC9C

주식회사 컴투스플랫폼 귀중